치매 노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노인]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치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를 수요자로 하여 치매의 개념부터 치료,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작성하여 콘텐츠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치매 노인 1
1. 치매의 이해 및 예방 4
1.1. 치매 알아보기 4
1.1.1. 치매, 어떤 병인가요? 4
1.2. 치매의 예방 6
1.2.1. 치매,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1.2.2. 치매가 염려되세요? 8
1.2.3. 치매,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11
2.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13
2.1. 치료비 지원 13
2.1.1.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3
2.2.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15
2.2.1. 치매 관련 시설 선택 시 참고하세요. 15
2.2.2. 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17
2.3.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20
2.3.1.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20
2.3.2. 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려요. 24
2.3.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5
2.4.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28
2.4.1. 치매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28
3. 치매 노인 보호 31
3.1. 치매 노인의 보호 31
3.1.1. 치매 노인의 실종이 염려되세요? 31
3.1.2.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34
3.2. 치매 노인 학대 신고 37
3.2.1.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37

1. 치매의 이해 및 예방

1.1. 치매 알아보기

1.1.1. 치매, 어떤 병인가요?

"치매"란?

치매의 개념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 지남력(指南力):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노인"이란?

노인의 개념

▪ 이 콘텐츠에서 치매 노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치매증상

치매의 증상

▪ 치매의 인지기능 증상과 정신행동증상 등을 두루 포함해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10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모두 있어야 치매인 것은 아니며, 이 증상이 없어도 치매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은 개인차가 있고, 원인과 경과, 주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1.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 2.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 3. 언어사용이 어려워진다.
> 4.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 5. 판단력이 감소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자주 한다.
> 6. 추상적인 사고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 7. 물건을 잘못 간수한다.
> 8.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온다.
> 9. 성격에 변화가 온다.
> 10. 자발성이 감소한다.
>
> <출처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사전-이거 치매 아닌가요? 참고>

치매 단계별 증상과 특징



경증 치매

가족이나 동료들이 치매환자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 어렵습니다.
- 말을 할 때 적절한 단어 선택이 어렵습니다.
- 자주 사용하지 않는 도구나 가전 제품 사용이 서툴러집니다.



중등도 치매

치매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단계입니다.

- 현관 비밀번호를 잊는 등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정보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 표현하는 방법과 이해도가 떨어져 대화가 어렵습니다.
- 옷을 입는 것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증 치매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일상생활 능력이 현저히 낮아져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되고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 언어능력이 상실되어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7쪽>

치매의 진단

치매 진단

▪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 첫째, 자세한 병력 조사입니다.

▹ 병력조사란 언제부터 증세가 시작되었고,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과정보다 이러한 문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 일단 증상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혹시 있는지의 여부도 묻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체중의 급격한 변화, 과거의 신체 질환들, 뇌 손상 여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 여부 등이 정확한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직접 진찰하는 과정입니다.

- 이 과정은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혈압, 체온, 맥박 등의 측정과 전신의 각 부분에 대한 진찰을 하고, 이어서 감각, 운동 신경이나 근육의 위축, 보행능력, 반사운동 등 각종 신경학적 기능도 평가하게 됩니다.

- 정신상태 검사는 우울증과 불안, 공포증, 망상 등의 정신현상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셋째, 검사실 검사 과정입니다.

- 위의 두 과정을 거친 후, 대부분의 경험 많은 치매 전문가들은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지의 여부, 또 치매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각종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 검사 과정은 신체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및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로 구분됩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사전-치매, 어떻게 진단하나요? 참고>

1.2. 치매의 예방

1.2.1. 치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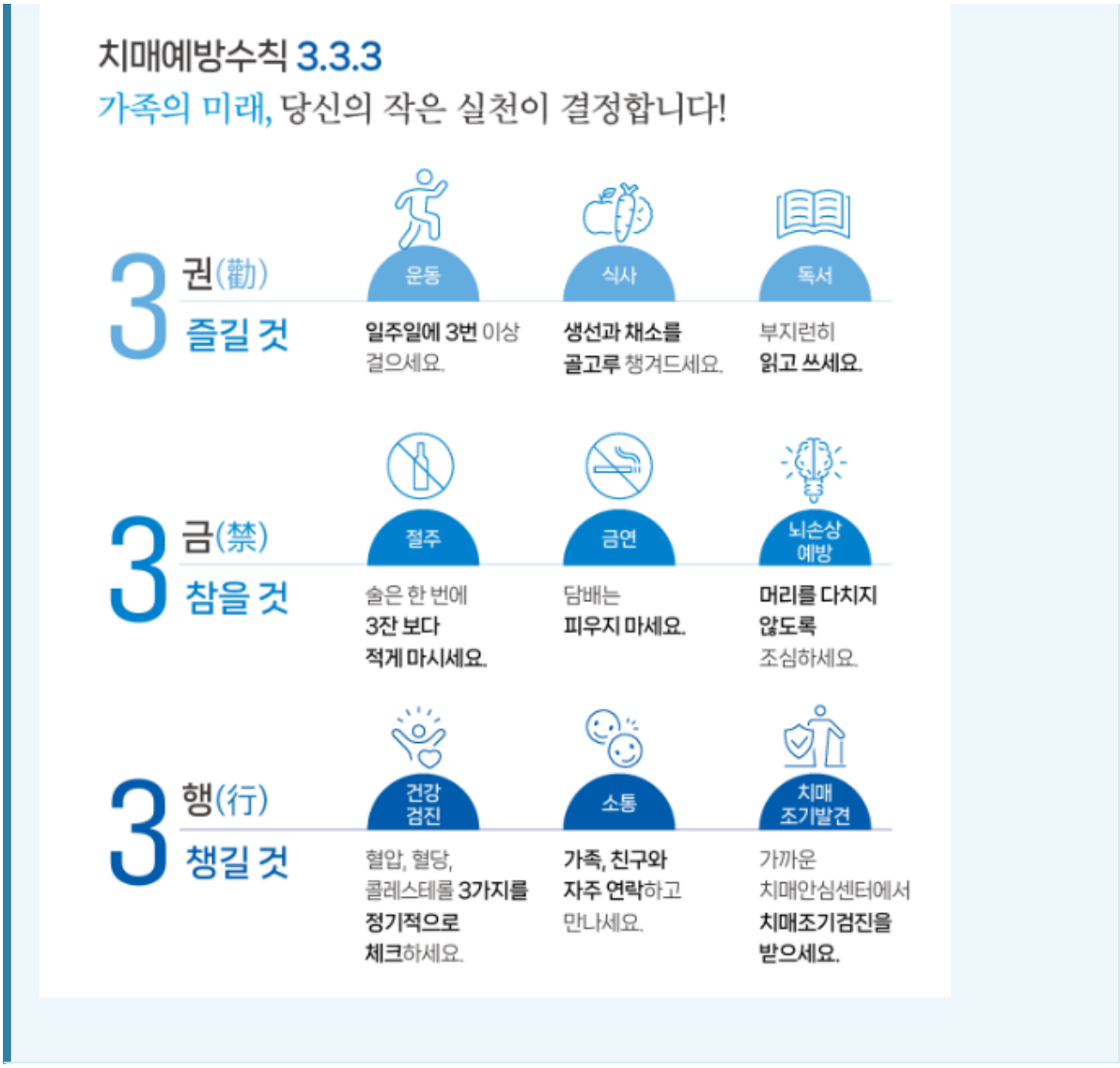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18쪽>

치매 예방수칙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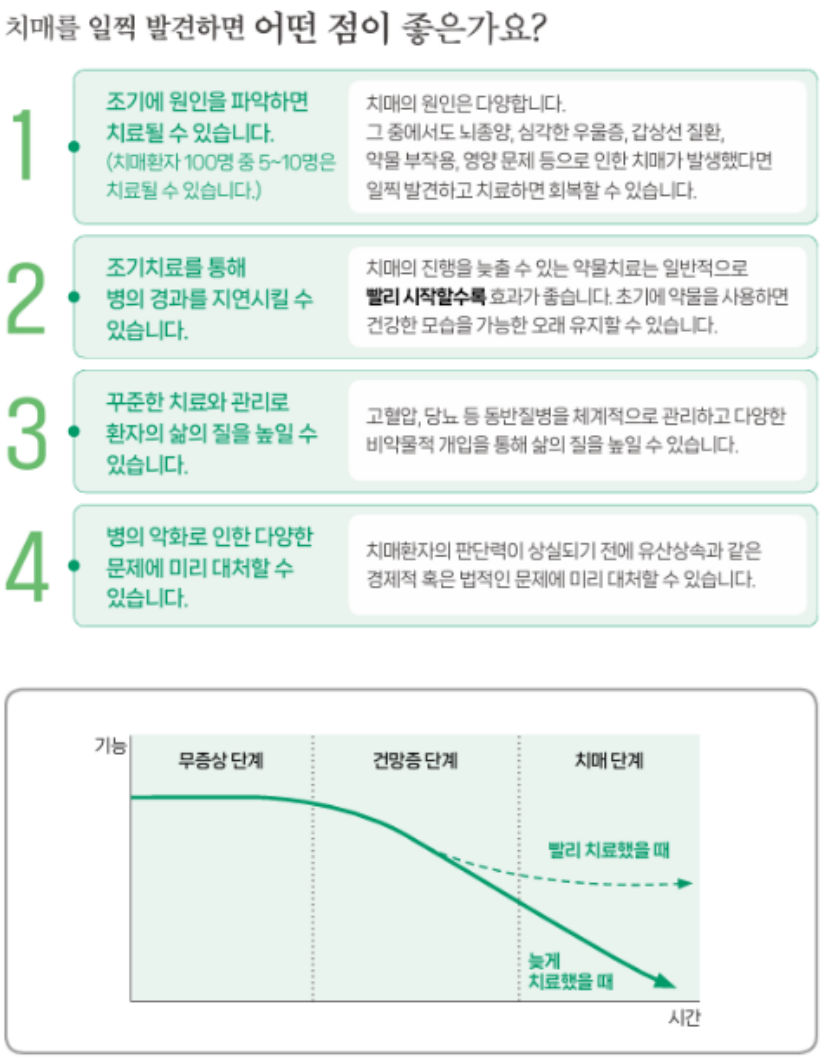
- 치매의 경우 예방 접종과 같은 확실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자들을 미리 조절함으로써 치매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뇌세포는 일단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 치매는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예방이 가능하며, 다음의 사항을 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출처 :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16쪽>

1.2.2. 치매가 염려되세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세요.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5쪽>

> ※ 아래의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치매검진사업"이란?

▪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함)을 시행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1항).

서비스 내용

▪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검사종류	검사도구
선별검사	MMSE, 하세가와치매척도, MoCA-K, SMCQ, SIRQD
진단검사	SNSB, CERAD-K, LICA
동반질환검사	한국판 노인 우울증 척도,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

▪ 선별검사

▹ 선별검사는 자세하고 정밀한 진단적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를 뜻하며, 주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관련된 짧고 간단한 검사들이 사용됩니다(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사전).

▪ 진단검사

▹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관련해 ´선별검사´ 단계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소요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환자가 체감하는 난이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사전).

▪ 동반질환검사

▹ 노인성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달리 피로감, 무기력 등의 신체 증상이 흔하며 건망증 등의 인지기능 저하 및 정신운동 지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매로 오인되기 쉽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판별이 필요합니다(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사전).

검진비용 지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지원 범위

√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 최대 11만원(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 치매실태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치매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치매실태 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 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 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복지 서비스의 현황

√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3. 치매,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치매,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치매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전국의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다양한 치매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정보-치매관련 제도 및 서비스).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2. 중증치매 산정특례
3.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
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 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6. 장기요양가족휴가제
7.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8. 성년후견제도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0.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출처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치매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https://seoul.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란?

-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센터(지역 보건소)에 방문해보세요!

※ 치매상담전화센터란?

-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 – 9988)에 전화해보세요!

2.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2.1. 치료비 지원

2.1.1.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매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아래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의료급여법」 제3조)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40%	3,589,930	5,879,000

·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동해시·화천군, 충청북도 진천군·괴산군 등

· 소득기준 폐지 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등

※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지역 및 소득기준 폐지 지역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9-130쪽>

지원 한도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5쪽).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5쪽 참고>

지원 신청 절차

※ 아래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신청

▪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6~127쪽).

- 지원신청서 1부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상자 선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7쪽).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예, 소득기준 140% 초과한 대상자 지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32쪽 참조).

※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채팅상담: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129 보건복지부 앱)

2.2.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2.2.1. 치매 관련 시설 선택 시 참고하세요.

치매 관련 시설에는 무엇이 있나요?

치매 관련 시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3쪽>

※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선택해야 하나요?

※ 아래의 치매 관련 시설 선택에 관한 내용은 중앙치매센터의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설 선택 방법

-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 상태의 악화보다는 돌봄 요구도의 증가가 입소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문제행동, 보호자의 건강 악화, 부담이 증가한다는 느낌, 인지기능 감퇴 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 치매환자를 위한 여러 시설들은 이름도 다양하며 기능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모두가 치매환자에게 적당한 것이 아니며, 병의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소 시기

- 다음의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 관련 시설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할 때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 줄 수 없을 때
  - 치매환자의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으로 타인과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 치매에 동반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때

시설 입소 시 고려 사항

-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비용
  - 방문하기 편리한 위치
  - 치매 노인의 증상과 중증도 맞는 프로그램
  - 건강을 고려한 식단과 간식
  - 응급상황이나 치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 안전대책

- 시설 직원의 태도
- 입원환자 개인의 권리
- 정기적인 건강체크
- 근무자와 환자의 비율

2.2.2. 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치매 노인을 시설에서 돌볼 수 있어요.

입소 대상자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참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 – 2등급

   √ 장기요양 3 – 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절차

▪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1부
-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

▪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입소여부 결정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시설급여 지원

▪ 치매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요건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복지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비용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비용의 일부는 치매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비용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소득·재산 등의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다음의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비급여 대상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참조).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복지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2.3.1.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려요.

재가급여 지원

▪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38쪽>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 ※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79~12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치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92쪽).

>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주·야간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96쪽).

▪ 이용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 이동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102쪽).
-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107쪽).
-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109쪽~112쪽).

▪ 이용 대상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 서비스 내용

▹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117쪽).

▪ 이용 대상자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이용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 **이용비용의 일부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

※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따로 소득·재산 등의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다음의 재가급여에 대한 이용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외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복지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려요.

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려요.

가족요양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가족요양비 지원 금액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7호서식).

▪ 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복지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아래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 6종을 통합한 것으로서 참여형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2쪽>

Q. 저희 아버지께서는 치매로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해요.

A.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서비스 대상자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5쪽).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돌봄서비스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구분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노인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노인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퇴원후돌봄군	√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 √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제공 가능
사후관리 대상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부부노인가구로 배우자가 투병 중으로 신청자가 간병 부담을 지고 있어 동거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으며, 스스로의 돌봄 또한 어려운 상황
- 동거가족으로부터 학대정황이 의심되므로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통해 모니터링 필요
- 동거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경우(조손가정, 치매동거가정 등)
  · 다만,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만 가능하며,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우선시할 것
- 동거자의 외부활동 동안의 일시적 독거로 안전·안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처: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3쪽 참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신청하거나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0쪽).

제출서류

-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0쪽).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0쪽).

대상자 선정 통지

- 신청인은 신청접수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관할 시·군·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결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받습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2쪽).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의 <일상생활 복지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2.4.1. 치매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치매 노인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 아래의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45쪽~153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이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고,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교류를 지원하여 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 프로그램,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각 지원 사업의 내용

가족교실 운영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보호자"란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의 가족, 후견인, 가족·후견인 외 보호자(친구, 이웃, 간병인 등)를 말합니다.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분소 등 별도 공간 확보
- 운영
  - 프로그램: 기본과정 운영 시 ´헤아림´ 또는 ´가치돌봄´ 중 선택하여 진행
  - 프로그램: 심화과정 운영 시 ´일상의 회복´, ´가치돌봄´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헤아림, 가치돌봄 외 희망다이어리, 휴(休)식(識)공(共)간(看), 한국치매협회 치매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가족 프로그램 으로 대체 운영 가능

자조모임 지원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장소
  - 오프라인: 치매안심센터 내외 등 모임이 용이한 장소
  - 온라인: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지원]-[우리동네자조모임]
- 운영
  - 오프라인: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치매관련 기사 및 정보제공, 장소세팅 및 가족카페 모임장소 예약, 자료 출력 등 지원
  - 온라인: 치매파트너와 자조모임 매칭, 게시판을 활용한 가족상담 진행 등
  - 기타: 필요할 경우 치매상담콜센터 자조모임 전담 상담사 배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다과 제공 가능

힐링프로그램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치매환자 함께 참여 가능)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경도인지장애자 함께 참여 가능)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분소,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장소(별도 공간 확보)
- 운영
  -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치매안심센터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행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대상

- 가족 및 보호자가 가족교실을 수강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장소

- 치매안심센터

▪ 운영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3. 치매 노인 보호

3.1. 치매 노인의 보호

3.1.1. 치매 노인의 실종이 염려되세요?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의무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함)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의2호).

신상카드의 제출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3 및 별지 제20호의12서식).

※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4항).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실종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한 조사

▪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2항).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4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치매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인식표를 발급받으세요.

※ 아래의 인식표 배부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권)』 306쪽 및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96쪽~298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식표와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는 어떻게 생겼나요?



[인식표] [실종대응카드] 앞면 [실종대응카드] 뒷면

1. 인식표에는 어르신의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정보를 보관하게 됩니다.
2. 특수재질의 천에 일련번호와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 전화번호(경찰청 국번없이 ☎112)를 인쇄하여 인식표를 제작하고, 배회가능 어르신의 의류에 가정용 다리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 계절별로 외투,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됩니다.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발급 신청

▪ 인식을 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됩니다.

치매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경찰청 지문등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세요.

※ 아래의 치매 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98쪽~299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치매 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 방법

▪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치매환자를 찾나요?**
>
>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치매환자를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안전Dream(www.safe182.go.kr) 또는 실종아동찾기센터(☎18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GPS)를 신청하세요.

> ※ 아래의 배회감지기(GPS)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99~302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배회감지기(GPS)란?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50쪽>

▪ "배회감지기(GPS)"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용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치매 노인은 배회감지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 길 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태
-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

이용 방법

▪ 기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GPS형: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손목시계, 목걸이, 열쇠고리형 등)

▹ 매트형: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

▹ 태그형: 블루투스 비콘 기술 및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 실시간 위치를 모니터링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

▪ 배회감지기는 무상보급 사업을 통해 보급받거나,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수급자가 배회감지기 구입 및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제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3.1.2.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성년후견제도



<출처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브로셔』, 1쪽>

성년후견제도란?

▪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 **※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
> **“재산관리·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치매 노인”**
>
> 고령남씨(가명, 85세. 치매)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큰아들이 보살펴 왔으나 병세가 심해져 이제는 전문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위해 고령남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를 대신해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 “한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
> **“어렵고 복잡한 일은 처리하기 어려운 초기 치매”**
>
> 초기 치매인 나도움 씨는 자신의 신변처리나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은행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 **※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딸이 없는 한 달 동안만 도움을 받고 싶은 치매 노인”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외동딸과 살고 있는 필요녀씨(76세)는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외동딸이 한 달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되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으나, 필요녀 씨를 도와 도우미 관리 등 일상 사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 “임의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고 싶은 분”

최근 치매판정을 받은 형의 자녀들이 재산분쟁에만 골몰하는 것을 본 대비남씨(60세). 정신이 온전한 지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매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자녀들의 분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의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임의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2항·제3항).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제4항).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 가정법원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

문의전화

- 가정법원 및 지역 지방법원
-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로 문의하세요.

>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치매 노인 학대 신고

3.2.1.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자료실-홍보자료,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VER3. 노인학대 유형』 >

치매 노인 학대의 유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치매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치매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치매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

▪ 치매 노인에게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4제1호).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 및 6.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의무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치매 노인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Q. 저는 의사인데요. 치매로 진단을 받은 할머니의 몸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의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 신고의무자(사회복무요원 제외)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Q.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그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A.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s://www.noinboho1389.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

기관명	주소	사이트	전화번호	팩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A동 205~206호 (생각공장 당산)		02)3667-1389	02)2634-5023
서울특별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4층(방배동)		02)3472-1389	02)523-1043
서울특별시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수유3동)		02)921-1389	02)921-1391
서울특별시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5층)		02)3157-6389	02)3157-6385
서울특별시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03, 삼희빌딩 3층(천호동)		02)470-1389	02)470-1385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